

2024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

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
규정에 의거하여 ‘지식재산 경영인증’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
모집합니다.

2024. 2.

KIPA  한국발명진흥회
지 역 지 식 재 산 실

사업목적

- 지식재산경영*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,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도 제고

* 지식재산경영 : 특허·디자인·상표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

인증주체 : 특허청

신청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신청시기 : 상시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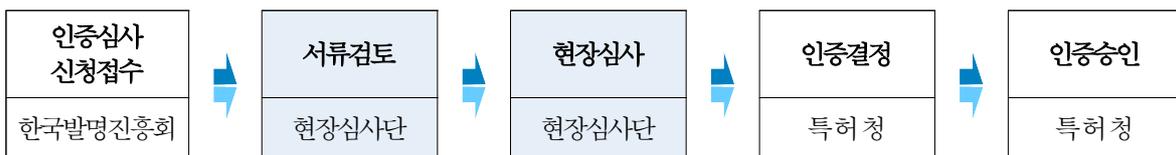
신청경로 : <http://www.ripic.org/ipcert> (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)

신청수수료 : 66만원 → 33만원(VAT포함)

* 갱신수수료 : 11만원

* 최종심사 탈락 기업 당해 연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무료 및 당해 연도 이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감면(11만원)

시행절차



* 인증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웹사이트 내 자가진단을 수행해야 하며,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 및 갱신을 신청 할 수 있음

심사항목(안)

심사항목	배점	심사항목	배점
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	10점	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	12점
직무발명 활성화	5점	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	21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	8점	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	8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	16점	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	8점
지식재산권 교육	5점	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	7점

□ 인증기업 지원시책

○ 특허청 및 산하 유관기관

-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
-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(4~9년차) 70% 감면
 - *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차등록료(4~9년차) 50%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, 인증기업에게는 20%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%의 감면 혜택 제공
- 특허청 실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
 - IP기반 해외진출지원 (前 글로벌 IP스타기업) 연차평가
 - IP C&D 전략 지원사업 (前 IP 제품혁신 지원사업)
 -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
- 특허분석평가시스템(SMART5) 이용비용 70% 감면
 - * 현재 중소기업에게 이용요금 50%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, 인증기업에게는 20%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%의 감면 혜택 제공 (관련 문의 : 02-3459-2874)

○ 중소벤처기업부

-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혜택
 - * 혁신창업사업화자금(개발기술사업화자금) 지원 대상

○ 기술보증기금

-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사업
 - * 지원 기간('24.01.07~'24.12.31.) 내에 경영인증 심사 시 지식재산공제 가입 가점을 받고 경영인증을 취득·갱신한 기업에 대하여 신청수수료의 일부를 사후 지원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○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
- TV(50%)·라디오(70%)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
- TV·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% 할인

○ SGI 서울보증

- ▶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10억원~30억원 확대(신용등급별 차등)
- ▶ 이행(계약, 차액, 선금금, 하자, 지급, 상품판매대금) 보증 및 BOND, 상생선금신용보험 보험료 10% 할인
- ▶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(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)
- ▶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「SGI Edu-Partner」 지원

* 상기 인증혜택은 '24년 2월 기준으로, 인증혜택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- [참고1]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[별표 1]
- [참고2]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[별표 2]
- [참고3]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[별표 3]
- [참고4]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(양식)

[참고1]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[별표 1]

※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요령 개정 예정으로 세부 항목(인증기준, 범위 등)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인증기준

1. 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	배점
항목명	세부내용	
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,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,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(최대 6점),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	10점
직무발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: 5점 ▶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(2점)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발명보상 : (출원) 0.5점, (등록) 1점, (실시 또는 처분) 1.5점 	5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특허: 첫 번째 건은 0.8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6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국내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6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5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특허: 첫 번째 건은 1.2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9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8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* 단, 특허권 (실용신안권 포함)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	8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특허: 첫 번째 건은 1.1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국내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7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6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특허: 첫 번째 건은 1.4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.2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1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8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7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* 단, 특허권(실용신안권 포함)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	11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(http://smart.kipa.org) 평가 결과 “AAA” 등급인 건당 1점, “AA”등급은 건당 0.9점, “A”등급은 건당 0.7점, “BBB”등급은 건당 0.5점, “BB”등급은 건당 0.3점, “B”등급은 건당 0.1점 부여(최대 5점) 	5점

지식재산권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- 자체 개최 1건당 1.5점,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	5점
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“(연구개발 인력 수)/(임직원 수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(15% 이상인 경우 5점) ▶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: 1인(1점), 2인(3점), 3인 이상(5점) 	5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“(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)/(최근 2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(10% 이상인 경우 7점) 	7점
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,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▶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	21점
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“(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·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)/(최근 2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(30% 이상인 경우 8점) 	8점
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(사용권)/통상실시권(사용권) 허여·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·유지 건수, IP 금융 이용(IP담보 대출, 벤처캐피탈 투자, 기술 신탁 등),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(NEP, 이노비즈 등) 건수 측정(건당 1.6점) 	8점
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<p>*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</p>	7점

2. 인증 판정기준 : 최종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

[참고2]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[별표 2]

제출서류

1.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최근 3년간 재무제표
3. 조직도, 업무분장표,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·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5.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6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
7.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특허청) 및 직무발명 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8.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지식재산권 관련 자체 및 외부 교육 과정에 대해 임직원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9. 조직도, 업무분장표,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
10.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자료
11.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보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(사용권) 허여·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의 도입·유지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
12.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특허권·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
13.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, 신탁, 투자 유치 등 IP금융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14. 지식재산 관련 인증서(인증 시점에서 유효한 인증만 제출)
15. 최근 2년간(갱신의 경우 3년)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지식재산공제 가입 증빙 서류 포함)
16. (갱신 시)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인증 혜택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점 사업 지원서 등)

[참고3]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[별표 3]

※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요령 개정 예정으로 세부 항목(인증기준, 범위 등)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인증갱신기준

1. 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	배점
항목명	세부내용	
직무발명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: 5점 (최근 3년 내 취득 시 인정) ▶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(2점)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발명보상 : (출원) 0.5점, (등록) 1점, (실시 또는 처분) 1.5점 	5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특허: 첫 번째 건은 0.8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6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국내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6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5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특허: 첫 번째 건은 1.2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9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8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* 단, 특허권 (실용신안권 포함)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	10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특허: 첫 번째 건은 1.1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.9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국내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0.7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6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특허: 첫 번째 건은 1.4점,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.2점,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- 해외 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: 첫 번째 건은 1점,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.8점,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7점,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.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* 단, 특허권(실용신안권 포함)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	13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(http://smart.kipa.org) 평가 결과 “AAA” 등급인 건당 1점, “AA”등급은 건당 0.9점, “A”등급은 건당 0.7점, “BBB”등급은 건당 0.5점, “BB”등급은 건당 0.3점, “B”등급은 건당 0.1점 부여(최대 5점) 	5점
지식재산권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체 개최 1건당 1.5점,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	5점
연구개발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“(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)/(최근 3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 (10% 이상인 경우 7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간 IP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이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의 3% 이상일 경우 만점(7점)의 범위 내에서 가점 1점 부여(정부지원금 제외) 	7점

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3년간 선행기술조사,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▶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	21점
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“(최근 3년간 보유 특허권·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)/(최근 3년간 매출총액)” 계산하여 점수 부여(30% 이상인 경우 8점) 	8점
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3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(사용권)/통상실시권(사용권) 허여·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·유지 건수, IP 금융 이용(IP담보 대출, 벤처캐피탈 투자, 기술 신탁 등),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(NEP, 이노비즈 등) 건수 측정(건당 1.6점) 	8점
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3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<p>*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</p>	7점
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3년간 지식재산경영제도의 인증 혜택을 이용한 기업 경영 개선 여부를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이용시 1점, 특허청 관련 혜택(우선심사 선정, 각종 사업 가점 취득 등) 이용 시 건당 0.5점, 타부처 사업 혜택(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등) 이용 시 건당 1점 	3점
지식재산경영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달성한 기업 성장을 측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출 증대(3년 전 대비 50% 증가 시 8점 부여), 고용 창출(3년 전 대비 20% 증가 시 8점 부여) 평가 <p>* 고용 창출의 경우, 해당 항목이 만점인 경우에도 최대 4점까지 가점으로 등록 ** 단, 해당 분야에서 성장이 없는 경우(성장률 0% 미만), 해당 분야 0점 처리</p>	8점

2. 인증 판정기준 : 최종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

[참고4]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(양식)

■ 발명진흥법 시행령 [별지 제3호의2서식]

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기업	기업명 (국문)	기업명 (영문)	
	대표자 (국문)	대표자 (영문)	
	기업규모 [] 소기업 [] 중기업	종업원 수 (명)	
	사업자등록번호	설립일	
	기업유형 [] 개인기업 [] 법인기업	법인등록번호 (법인기업인 경우만 적습니다)	
	업종 (산업분류코드: □□□□□)		
	주 생산품		
	최근 매출액 (백만원)	최근 수출액 (백만원)	
	주요 수출국 주소 (본사 기준)		
담당자	성명	소속부서	
	직위	전화	
	e-mail	Fax	
신청 유형	[] 일반 신청 [] 유효기간 연장 신청		

「발명진흥법」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특허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3. 지식재산 담당 조직·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.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·보호 및 활용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 기업	→	접 수 특허청	→	심 사 특허청	→	인증여부 결정 특허청	→	인증서 발급 특허청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